

Anti-Corruption and Bribery Policy

부패 및 뇌물방지 정책

Samsung Biologics

목적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법과 윤리 준수, 깨끗한 조직 문화 유지라는 경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내·외 부패방지 법규를 준수하고 윤리적이며 정당하게 사업을 수행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부패 및 뇌물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부패 행위에 대해 고의적으로 묵인하거나 간과하지 않습니다. 본 정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세부 가이드와 함께 반부패 관련 임직원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적용대상

본 정책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해외법인 (이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든 임직원(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자문역, 기타 근로자 포함) 및 업무 대행자*에게 적용됩니다. 필요에 따라 해외법인은 별도의 반부패 정책을 보유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모든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정책들의 내용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릅니다.

당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제 3 자 및 의료인 등(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정책을 적용합니다.

용어의 정의

- ‘공직자 등’이란 공무원 (임명직, 선출직 상관없이 정부의 입법, 행정, 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공직 후보자, 정당 당직자, 국영기업체의 임직원 (정부가 실질적으로 운영 전반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 임직원),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공적 국제 기구 (IMF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정부의 공식 에이전트 또는 컨설턴트,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나 공적 업무를 위임 받은자를 의미합니다.
- ‘부정한 사업상 이익’이란 법령 등을 위반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득한 모든 이익을 말합니다.
- ‘금품 등’이란 호의로 제공하는 선물·향응 및 금전, 유가증권 등 일체의 유·무형 경제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 ‘부패(Corruption)’는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본인 또는 제 3 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법령 및 사규를 위반하여 회사 또는 공공에 손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 ‘뇌물(Bribery)’은 직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부정한 사업상 이익 및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 제안하는 행위, 또는 이를 수수하거나 요청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해관계(경제적 이익, 사적인 관계 등)가 회사의 이익 또는 직무의 공정성과 충돌하거나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해상충의 범위는 임직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인척 또는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 3 자 및 단체와의 관계를 모두 포함합니다.

기본 원칙

반부패 및 뇌물방지 법규, 정책 및 가이드 준수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은 반부패 및 뇌물방지 법규와 본 부패 및 뇌물방지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 주요 반부패 및 뇌물방지 법규에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의 현지법 이외에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FCPA), 영국의 뇌물방지법 (UKBA), 한국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등이 있습니다.

금지되는 행위

- 뇌물 수수 금지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 등을 수수 또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한 금품 등 제공 금지
부정한 사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해 금품 등을 제공·제안 또는 약속할 수 없습니다.
-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 등에게 위법한 청탁을 하거나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을 하지 않습니다.
- 급행료 지급 금지
‘급행료’는 일상적인 정부 행위의 수행을 촉진시키거나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지급되는 소액의 금액을 의미하며,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물과 접대 및 기타 혜택

- 기본 원칙 (Acceptable Behavior)
우호적인 사업상 관계를 형성 또는 유지하거나 정당한 사업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선물 또는 접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부패방지 및 뇌물 방지 관련 현지 법령과 수령자가 속한 조직의 규정을 준수하여 거래를 수행할 것
 - 정당한 사업목적에 위한 것이고 외견상 적절할 것
 - 수령자와 제공자 관계를 감안할 때 적절하고 소액이어야 할 것
- 금지 행위 (Prohibited Activities)
 - 현금 지급 금지
 - 큰 액수 및 반복적 선물 및 접대 제공 금지

*공직자 등에게 선물 또는 접대를 제공하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하고, 반드시 내부 프로세스에 따르도록 합니다.

기부 및 후원

- 기본 원칙 (Acceptable Behavior)
 - 자선단체 등의 기부 및 후원 시, 회사 규정과 윤리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할 것
 - 모든 기부 내역을 문서화하고 필요한 승인 절차를 거칠 것
- 금지 행위 (Prohibited Activities)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으로 불법적인 정치 기부 행위 일절 금지
 - 부정한 사업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이해상충의 최소화 및 방지

- 기본 원칙 (Acceptable Activities)
 - 통상적인 수준의 외부 활동 : 직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순수 학술 활동, 강의, 저술 활동 (단, 사규에 따른 사전 신고 또는 승인 필요)
 - 사전 신고 및 승인된 거래 : 사전에 관련 부서에 투명하게 신고하고 회사가 공정성 평가를 거쳐 정당하다고 승인한 후 직무 수행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 금지 행동 (Prohibited Activities)
 - 사적 계약 및 거래 : 회사의 승인 없이 본인, 가족 또는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이해관계를 가진 업체와 회사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직무상 정보의 사적 이용 : 직무 수행 중 득한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 3 자가 이익을 취하는 행위

장부와 기록관리

임직원은 각종 거래를 반영하여 상세하고 정확하게 장부 및 기록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임직원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적절하게 회계와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실이 아니거나 위조된 내용을 기록하거나, 기록되어야 할 내용을 누락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회사는 기록된 내용을 보관 중 위·변조 또는 삭제되지 않도록 데이터의 완전성을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본 정책의 실행

부패방지경영시스템 (ABMS)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 정책의 실행을 위해 ISO 37001 기준에 부합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갑니다.

제보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은 본 정책 또는 반부패 법규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이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제보해야 합니다. 제보자는 이메일 제보 (bio.cp@samsung.com, sbl.audit@samsung.com), 홈페이지를 통하여 익명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인적사항, 제보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선의의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sbl.audit@samsung.com 에 접수된 제보는 전담 및 관련 부서의 제보자와의 상담, 사실관계 규명, 심층조사 등을 거쳐 시정 및 징계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조사 결과는 매년 상하반기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조치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벌 및 기타

본 규정 및 부패방지법령 준수를 위한 점검·모니터링 및 위반시 제재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절차는 회사규정 및 준법프로그램을 준용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은 본 정책 또는 반부패 및 뇌물방지 법규 위반 시 내부 기준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습니다. (최고 해고)